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9일,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수산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수산물 생산량에서도 양식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에는 57.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

그러나 국내 양식 어가는 2020년 3만 2,375명, 1만 3,207가구로, 2005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²⁾ 양식어가의 평균 소득은 2022년 7,841만원으로 2005년 대비 12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부채는 더 많이 증가(144%)한 것으로 나타나,³⁾ 양식어가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전국 2만 6,018개소(2022년 기준)의 양식장은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 부담 가중, 고수온·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등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1) 수산물 생산 중 양식비중은 1980년 10.3%에서 2000년 31.2%, 2010년 46.9%, 2020년 57.5%로 지속적으로 상승

2) 어가: 2005년 2만 7,815가구 → 2020년 1만 3,207가구(△52%),
인구: 2005년 7만 5,875명 → 2020년 3만 2,375명(△57%)

3) 평균소득: 2005년 3,421만원 → 2015년 6,139만원 → 2020년 8,638만원 → 2022년 7,841만원
평균부채: 2005년 4,729만원 → 2015년 7,991만원 → 2020년 1억 3,116만원 → 2022년 1억 1,536만원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되, 지원대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설비로 한정함으로써 수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① 이 법에 따라 양식업자의 경영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66, 령§48),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장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26③-1.), ③ 보다 일반적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27).

또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신재생에너지(소수력 발전: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 설비 지원 사업⁴⁾ 및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기 시행 중이며,⁵⁾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 중에 있음.⁶⁾

[표] 현행 법률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 규정

법 률	조 문	내 용
양식산업 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 융자 가능
양식산업 발전법	제48조(양식산업의 육	양식경영 지원사업,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

4) 양식장 신재생에너지(소수력발전) 설비 지원 사업 개요는 [참고 1] 참조

5)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 2] 참조.

6)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 3] 참조

법 률	조 문	내 용
시행령	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용자의 대상 사업)	의 개량사업, 양식사업 및 양식장 환경 개선·관리사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국가·지자체는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실시 가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행 규정만으로도 사업 추진에 법적 제약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항 신설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의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자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등 규정으로도 에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양식장의 소수력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